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제982호
-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 외 22명
- 발의일자 : 2016년 2월 5일
- 회부일자 : 2016년 2월 15일

2. 제안이유

- 최근 마사회가 학교 인접지역에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외 발매소의 설치·이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장외발매소가 경마장 본장에 비해 사행성이 더 높아 도박중독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최근의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사례에서 보듯이 주거·교육 여건 침해 등으로 인해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을 크게 유발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장외발매소 인접지역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장외

발매소 이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나,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장외발매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고 추가적인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은 학교 및 주택 인접지역에 장외발매소 설치제한 등의 근거를 확보하여 주택 및 학교 주변의 주거·교육권 침해 등으로 인해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을 크게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함.

3. 주요내용

- 장외발매소의 입지, 이전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등 사전절차를 비롯한 명확한 기준 필요
- 주택가 및 학교주변의 장외 마권발매소의 폐해를 막기 위한 「한국마사회법」의 개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한국마사회법」, 「학교보건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없음

5. 이송처

-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6. 검토의견

- 본 건의안은 2015년 5월 31일 개장한 용산 화상경마장으로 서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지방자치단체(용산구)의 인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개장하였으나 인근 학교와 인접해 있어(235m 거리)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 및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 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2.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설치·운영하는 하상경마장(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농림축산식품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마사회법」 제44조에서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있음.

- 이에 2014년 7월 25일 제254회 임시회에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이 신원철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바 있으며,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반대 등 사회적 갈등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또는 동의절차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표1에서와 같이 화상경마장 신설·이전시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교육환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행행위장으로부터 학교정화구역을 현행 200m에서 1km로 확대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현재 국회에서도 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참고자료 3).

〈표1 관련 법률 개정안〉

1.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구 분	현 행	개정(안)
경륜·경정법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시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 의무화
한국마사회법	장외 발매소 설치·이전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시 사업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 의무화

2. 학교보건법

-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행사업장 입지규제 강화
(현 학교정화구역 200m → 1km 로 확대) (학교보건법)

구 분	현 행	개정 또는 신설
학 교 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정화구역을 200m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정화구역 : 50m - 상대정화구역 : 200m •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 및 각 장외 발매소) 시설 설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 및 각 장외발매소) 시설은 예외적으로 학교정화구역을 1km로 확대

- 현재 서울시의 경마 장외발매소는 강남구, 강북구, 강동구, 동대문구, 종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도봉구의 총 9개 구에 위치해 있으며,

표2의 2014년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총 76,464억원으로 장외발매소 입장객 수는 사행산업별 전체 입장객 23,657천명 중 15,296천명으로 약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참고자료 7.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2 2014년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카지노업 ¹⁾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계
	강원 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총매출액 (비중)	14,220 (7.1)	13,772 (6.9)	76,464 (38.4)	22,019 (11.1)	6,808 (3.4)	32,827 (16.5)	32,813 ²⁾ (16.5)	10 (0.01)	198,933 (100)
순매출액 ¹⁾ (비중)	14,220 (16.4)	13,772 (15.9)	20,526 (23.7)	6,161 (7.1)	1,901 (2.2)	16,163 (18.7)	13,728 (15.9)	3 (0.00)	86,474 (100)
입장객수 (천명)	3,007	2,962	15,296	5,289	2,358	-	-	34	-
1인당 평균베팅액 ¹⁾ (만원)	47.3	46.5	50.0	41.6	28.9	-	-	2.9	-

출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또한 장외발매소는 여가·레저 기능이 취약하며 불건전하게 운영됨으로서 도박중독자 양산 및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바, 경마·경륜·경정의 오락적인 측면보다는 베팅을 통한 매출액 증대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서울시에 위치해 있어 서울시의 장외발매소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개입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서울시 도심 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주변 교육 시설을 확인한 결과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개 자치구 중 6개의 자치구의 학교들이 장외발매소와 550m이내에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장외발매소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 거점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 「학교보건법」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와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에 사행행위장/경마장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작 경마장과 마권 장외발매소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법」에는 관련규정이 전무한 상황임.

〈표3 경마 장외발매소 주변 교육 시설(550m 이내)〉

위 치	학 교	거 리
동대문	대광고등학교	310m
	서울용두초등학교	410m
	대광중학교	460m
	대광초등학교	510m
강남(선릉)	진선여자중학교	400m
	서울도성초등학교	470m
	진선여자고등학교	520m
종로	서울송신초등학교	350m
	성동공업고등학교	520m
	대광고등학교	520m
중랑	서울중화초등학교	480m
도봉	창일중학교	410m
	서울 창동초등학교	490m
	서울 월천초등학교	500m
	서울 창일초등학교	510m
	노곡중학교	520m
	상계고등학교	550m
용산	성심여자중학교	235m
	성심여자고등학교	235m

출처: 2014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 분석 및 부작용 폐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표4 장외발매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 사항>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자들의 음주 및 비도덕적 행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 도박자들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안전 위협 - 지역 집값 하락
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발매소 인근에 교육 시설(학교, 도서관, 학원 등)이 위치해 있어 학생들 교육에 부정적 영향 예상
교통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 교통체증, 도박 이용객을 위한 노점상이 도로 점령 - 골목주차/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으로 인한 이웃주민 및 본인 경제적 문제 및 가정불화 - 지역의 슬럼화 - 상권 침체

출처: 2014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 분석 및 부작용 폐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 용산구의 경마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한 민원은 2010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바,

201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용산역에서 전자랜드 인근으로 장외발매소 이전을 허가하였으며 2010년 6월 용산구도 건축을 허가함. 그러나 2013년 5월 이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발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용산구 역시 마사회에 건축물 용도 자진 변경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그 이후로 주민들은 청원서 제출, 집회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장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12일에는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내에 ‘키즈카페’ 건축허가를 놓고 한국마사회가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건물에 ‘키즈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은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임.

더불어 ‘2014년 서울시사행산업 현황 분석 및 부작용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표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외발매소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도박중독률(14.2%)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도박중독률(9.8%)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5 서울시 장외발매소 유무 지역에 따른 도박문제비율〉

단위: 명(%)

	장외발매소 유	장외발매소 무	전체
비문제	537 (85.8)	758 (90.2)	1295 (78.8)
문제	89 (14.2)	82 (9.8)	171 (21.2)
전체	626 (100)	840 (100)	1466 (100)

출처: 2014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 분석 및 부작용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또한 장외발매소 인근의 주민들은 주거, 교통, 교육 환경의 피해를 토로하고 있으며 분명한 피해가 지자체에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민들은 장외발매소 외곽 이전부터 장외발매소 인근 주민 복지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현행 법률 및 관련 제도 상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사행산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다양한 방법의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행산업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용산 화상경마장 현황**

- 소재지 : 용산구 청파로 52(한강로 3가)
- 자산가치 : 총 1,210억원(건물매입가 97억원, 기계장치 25억원, 내부공사 33억원, 집기운영 23억원, 운영비용 4억원)
- 건축규모 : 지하7층 ~ 지상18층(연면적 18,212㎡/문화 및 집회시설)
- 운영현황 : '15. 5.31 용산지사 장외발매소 개장
 - 영업시간 : 10:00~19:00(금), 09:00~19:00(토, 일)
 - 입장정원 : 574명(13층 128석, 14층 126석, 15층 126석, 16층 98석, 17층 96석)
 - ※ 일일 평균 입장객 수 : 약 540명
 - 건축물 층별 운영 현황 (2016. 2월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1~7층	복합문화공간(미운영)	키즈카페 포함
8~9층	사무실(도박중독 상담센터 등)	
10~12층	복합문화강좌(한국무용 외 6개 강좌)	
<u>13~15층</u>	<u>로열 발매소(지정석 380석)</u>	★ <u>이용료 2만원</u>
<u>16~17층</u>	<u>페가수스 발매소(지정석 194석)</u> ※ 로열 발매소와 식사 및 음료 차이	★ <u>이용료 3만원</u>

□ 용산 화상경마장 관련 추진경위

- '10. 6.30 : 용산구 건축허가 (용산구청)
- '12. 9.26 : 용산구 건축물 사용승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 '13. 5월 :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주민비상대책위 발족
- '13. 8.20 : 용산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 요청(용산구→마사회, 농림부)
 - '13. 8.23 : **이전 촉구 12만명 서명부 전달**(반대주민대책위→마사회,농림부)
- '13.10. 1 : **용산구 현장시장실 시장 현장방문**
 - '13.10. 2 : '지역현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전 반대입장 공개발표**
- '13.10.13 :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재검토 요청 공문발송 (서울시→마사회, 농림부)
 - 교육 및 주거 환경 악영향 우려로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전계획 철회하거나 시 외곽으로 이전 등 전면 재검토 요청
- '14. 1.17 : **이전 재검토 촉구 공문 발송** (서울시→마사회)
 - 생활밀집지역에 사행성 화상경마장 이전은 정부정책 위반 및 교육환경 저해요인이 되므로 화상경마장의 서울시 외곽이전을 재촉구
- '14. 1. 23 : **대변인 통해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성명 발표**
 -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장외발매소 이전 재검토 요구
- '14. 6. 28 ~ 9월말 : 시범운영 개장 (총18개층 중 3개층)
- '14. 7. 20 : **서울시장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농성장 방문**
 - 농성중인 주민 위로 및 한국마사회 측에 화상경마장 영업중단 요청
- '14. 5~10월 : 사행산업 현황 조사 및 폐해대책 연구용역 실시
- '15. 1. 22 : 용산 화상경마장 문화공감센터 개장(2층~7층)
- '15. 5. 21 : 시장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 건축물의 용도를 전환하여 분양하거나 상가로 활용 등 대안 강구 요청
- '15. 5. 29 : 서울시,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철회 성명 발표
- '15. 5. 31 :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 '15. 7. 13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 수사의뢰(강남, 용산경찰서)
- '15. 8. 28 : 미래부 '용산화상경마장 건물내 키즈카페' 지원취소

□ **입법동향 (2016. 2. 24 현재)**

○ **사행산업 장외발매소의 설치 제한을 위해 관련 법안 9건 발의중**

발의 의원	발의일	관련 법률	주요 내용	현 황
김동철(민) (교문위) (광주광산갑)	'12.6.21.	한국마사회법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규정 신설 - 학교, 주택 출입문 2km 이내 ▷1인 1일 구매한도 제한(10만원)	'12.7.31 '12.11.9 법안소위 심사(2회)
박인숙(새) (국토위) (송파 갑)	'12.9.27.	한국마사회법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규정 신설 - 학교, 주택 출입문 1km 이내	'12.11.9 법안소위 심사
김광진(민) (국방위) (비례대표)	'13.6.27.	한국마사회법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또는 변경 시 사전 주민동의(19세 이상 1/2) 의무 신설	'13.11.14 법안소위 회부
황주홍(민) (국토위) (전남장흥강진)	'13.11.21	학교보건법 ※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범위 확대 (200m → 250m)	'14.4.9 법안소위 회부
진영(새) (안행위) (용산구)	'13.12.4.	한국마사회법	▷도시주거지역 내 장외발매소 이전 등 감축계획 제출 의무(매 3년) 신설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14.2.18 법안소위 회부
박범계(민) (기재위) (대전서구을)	'14.2.4.	한국마사회법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규정 신설 - 주거지역, 학교 경계선 2km 이내 ▷장외발매소 축소 등 건전화 계획 제출(매 2년) 의무 신설	'14.4.14 법안소위 회부
이학영(민) (정무위) (경기 군포)	'14.10.13	한국마사회법	▷미권 장외발매소 승인 3년 내 취소	'14.11.19 법안소위 회부
신경민(민) (외교위) (영등포을)	'15.3.4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범위 확대 (200m → 1km)	'15.3.5 법안소위 회부
신경민(민) (외교위) (영등포을)	'15.10.8	한국마사회법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기초자치 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	'15.10.12 법안소위 회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결과

□ 면담개요

- 일 시 : 2015. 5.21(목) 16:30 ~ 17:00
- 장 소 :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2층(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 빌딩 2층 세종
- 면 담 자 : 서울시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배 석 자 : 서울시 관광사업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 면담결과

시장 건의내용

- 최근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움직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한국마사회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음
-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전환하여 분양하거나 상가로 활용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할 경우 용산구와 협의하여 우리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답변

-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반대의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개장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국마사회의 권한임
- 다만,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시장님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한국마사회에 전달하겠음

서울시, 용산주민 피해와 사회전반 반대의견 외면한 한국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철회해야

- 쾌적하고 평온한 교육·주거환경 사행시설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

서울시는 한국마사회가 용산 주민은 물론 사회 전반의 공통된 반대 의견을 외면하고 화상경마장 개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함.

서울시의 확고한 기본 입장이자 원칙은 가까운 도심 내에서 화상경마장 영업을 이뤄져서는 안 되고, 사행시설은 도심 생활밀집지역과 격리해야 한다는 것임.

한국마사회의 도심 내 화상경마장 개장은 생활밀집지역에서 격리,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임.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용산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최근엔 마사회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영업중단 및 타 용도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음.

서울시와 용산 지역주민, 시민단체, 구의회, 시의회는 물론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도 한 목소리로 개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4년 6월 한국마사회에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용산 화상경마장의 외곽이전 촉구결의안을 용산구의회('14. 2.24)는 물론 서울시의회('14. 7. 2)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음.

국회 차원의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에 대한 반대 활동과 사행산업장 입지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히 가시화되고 있음.

지난해 8월 박원석 의원 등 10명이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최근 신경민 국회의원의 학교보건법 개정(현행 학교정화구역에서 이격거리 200m→1km 확대)을 발의한 바 있음.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재임 시 주민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한국마사회는 지시 이행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총리가 공백인 현 시점을 교묘히 이용해 기습적으로 개장하려 하고 있음.

사행시설에 대한 영업허가권이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부처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사행 산업장 신설·이전 시 갈등 최소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동의절차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임.

쾌적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은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시설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함.

한국마사회가 교육환경 훼손, 주거환경 침해에 대한 주민들은 물론 사회 전반의 공통된 반대의견에 귀 기울여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2015. 5. 29

서울특별시

□ **용산화상경마장 건물내 「키즈카페」 설치 관련 소송 경위**

- '15. 4. 3 미래창조과학부의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선정 공고
- '15. 4.10 한국마사회, SK플래닛, 페리아코리아 등 콘소시엄 사업자 선정 (11억 8천 7백만원 지원)
- '15. 7.16 동 콘소시엄 용산 화상경마장 1~7층 용도변경을 용산구에 신청 (문화집회시설 → 가족형놀이 여가시설)
 ※ 홀로그램 극장용 콘텐츠, 증강현실 테마공간 등
- '15. 7.29 **용산구청 용도변경 신청 불허가 통지**
- '15. 8.28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사업 취소 및 지원비 회수
- '15. 9.30 (마사회→서울행정법원) 불허가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태평양법무법인)
- '16. 2.12 (서울행정법원) **한국마사회 「불허가가처분 취소 청구」 승소**
- '16. 2.18 (서울행정법원) 용산구청 항소장 제출

【키즈카페 관련 용산구청 의견】

- 마사회의 키즈카페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주용도로 사용중인 청소년유해 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여가시설 (1층~7층)' 을 설치하는데 쟁점이 있음
-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건물내 키즈카페를 운영하며 **어린이 놀이시설인 유기기구를 설치**할 경우 '기타 유원시설업'에 해당되어 건축물에 용도를 '운동시설'로 변경해야함.

구 분	바닥면적 500㎡이하	바닥면적 500㎡이상
건축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서울지역 화상경매장 현황



개장순	지점명	개장일자	소재지	입장정원(명)	용도지역
1	도 봉	'92. 9. 4	도봉구 노해로67길 14(창동)	4,022	일반상업
2	선 릉	'93. 9. 4	강남구 테헤란로 416(대치동)	3,093	일반상업
3	종 로	'94. 3.12	종로구 난계로29길 49(숭인동)	1,803	일반상업
4	영등포	'96. 3. 2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영등포3가)	7,182	일반상업
5	중 랑	'00. 9. 2	중랑구 망우로 390(망우동)	1,249	근린상업
6	강 남	'01. 9.22	강남구 도산대로 529(청담동)	2,194	일반상업, 3종 주거일반
7	강 북	'02. 2. 2	강북구 도봉로 302(번동)	3,089	일반상업
8	동대문	'05. 9.24	동대문구 난계로 254(신설동)	3,356	일반상업, 준 주 거
9	강 동	'06.12.22	강동구 구천면로 200(천호동)	4,689	일반상업
10	용 산	'15. 5.31	용산구 청파로 52(한강로3가동)	2,718	일반상업

전국 장외발매소 현황

연번	지역	시/구	위치
합계	20		
계	9		
1	경기도	광명	광명시 디지털로
2		구리	구리시 안골로
3		부천	부천시 오정구
4		분당	성남시 분당구
5		수원	수원시 영통구
6		시흥	시흥시 마유로
7		안산	안산시 단원구
8		의정부	의정부시 시민로
9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1	광주	동구	동구 구성로
1	대구	달성군	달성군 가창면
1	대전	서구	서구 월평중로
계	2		
1	부산	동구	동구 자성로
2		연제구	연제구 월드컵대로
계	4		
1	인천	남구	남구 인중로
2		부평구	부평구 장제로
3		연수구	연수구 벚꽃로
4		중구	중구 신포로
1	경상남도	창원	창원시 성산구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상정두정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하여 교통, 환경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2.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주변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2015년 10월 23일 조례를 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음.

1.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회의원
 2.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3.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4. 그 밖에 시민 복리 증진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

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